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br>번호 | 1728 |
|----------|------|

2017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자 : 2017년 4월 4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4월 6일

라. 상정결과 : 제2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4월 20일, 상정·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고흥석)

### 가. 제안이유

- 성북구 길음뉴타운 지역은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낙후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성북구로부터 시유지 상에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사용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

지역의 균형발전 효과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86-8
- 면 적 : 3,579.5 $m^2$  (구유지 564 $m^2$  포함 토지면적 총 4143.5 $m^2$ )
- 소유자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사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 11,504,513천원(3,579.5 $m^2$  × 3,214천원)

### (2)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6-8
- 세부내용
  - 건축면적 : 1,120 $m^2$
  - 규 모 : 연면적 9,150 $m^2$ (지하2, 지상4)
  - 용 도 : 문화복합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센터,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연장 등)
- 사 업 비 : 25,960백만원(국비 7,900, 시비 6,242, 구비 11,818)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

### (3)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7. :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타당성 조사)
- 2015. 7.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계획 수립(성북구)
- 2015. 8.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적정)
- 2015. 10. :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조 건 :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조건
- 2015. 11.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 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8호)
- 2016. 3.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내 용 : 임시공영주차장으로 2016. 6. 30까지 성북구의 사유지 무상사용 승인
- 2016. 7.~11. : 설계공모
- 2016. 11. : 설계용역 착수
- 2017. 2. : 토지 재산관리관 변경(서울도서관 → 문화시설과)
- 2017. 3.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내 용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목적으로 '17.7.1.~'22.6.30.까지(5년간) 성북구의 사유지 무상사용 승인

## 다.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2) 예산조치 : 2017년 47억 5천6백만원 기확보 (시비32억 6백만원, 국비4억5천만원, 구비11억원)

(3) 협의내용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목적으로 2017.07.01.~2022.06.30.까지(5년간) 성북구의 사유지 무상사용을 승인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구 1286-8번지 일대에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자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타 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권역 문화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시유지 상에 구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로 서울시장과 성북구청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시유지 상에 구 소유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나.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개요

- 성북구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부지 4,143.5 $m^2$ (서울시 3,579 $m^2$ , 성북구 564 $m^2$ )로 연면적 9,150 $m^2$ (지하2층,지상4층)의 규모이며 시청자미디어센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 기타 용도로 건립할 예정임.

## 다. 건립 경과

- 길음뉴타운 주민들의 지속적인 부지개발 요청에 따라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 건립 등의 개발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음.

성북구는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8월에는 201억원의 사업비로 서울시 투자심사(적정)를 완료했으며, 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마쳤음.

이후 서울시의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2016년 6월 30까지 성북구가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바,

2016년 7월부터 설계공모를 거쳐 11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성북구가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승인하였음.

## 라. 건립 계획 및 예산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은 국비 79억원, 시비 62억 4천 2백만원, 구비 119억 1천8백만원으로 총 259억 6천만원이며,

2017년에 국비 4억5천만원, 시비 32억 6백만원, 구비 11억원으로 총 47억 5천6백만원을 확보하였음.

서울시 문화시설과는 이 중 시청자미디어센터에 12억 4천1백만원과 도서관 공사비 7억 2천8백만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위해 총 32억 6백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지원 연도별 세부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br>(전체) | 계<br>(총사업비) | 연도별             |                               |   |   |
|------------|-------------|-----------------|-------------------------------|---|---|
|            |             | 2016이전          | 2016                          | 2017  | 2017 이후   |
| 계          | 25,960      | 50              | 996                           | 4,756   | 20,158  |
| 국비         | 7,900       |                 |                               | 450   | 7,450   |
| 시비         | 6,242       | 50<br>· 티당성 용역비 | 996<br>· 설계공모비202<br>· 설계비794 | 3,206<br>· 시청자미디어센터<br>공사비 1,241<br>· 설계비 130<br>· 감리비 1,065<br>· 시설부대비 42<br>· 도서관 공사비 728 | 1,990<br>· 시청자미디어센터<br>공사비 1,241<br>· 감리비 31<br>· 도서관 공사비 718 |
| 구비         | 11,818      |                 |                               | 1,100   | 10,718  |

마. 검토의견

- 2014년 실시한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에서 사업환경분석, 입지분석, 주민수요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복합 문화센터 건립 시 도입을 희망하는 시설은 생활체육시설, 공연장, 도서관, 전시시설로 나타났으며 선호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 생활체육시설(26%) > 도서관(23%) > 전시시설(17%)

2순위 : 공연장(22%) > 생활체육시설(19%) > 전시시설(17%)

3순위 : 생활체육시설, 전시시설(16%) > 공연장(15%) > 동네 창작공간 (14%)

이러한 선호도를 반영하여 제시된 대안으로 단일 시설 건립보다 복합용도로서의 시설 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바 시청자미디어센터와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연장을 함께 건립하는 안으로 추진되었음.

- 이 중 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재단)는 인터넷 및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확산으로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며

서울특별시는 2015년 12월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성북구청,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17년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있음(2016.12.16).

- 다만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사업목적과 내용이 현재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매우 유사하며 “2017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서 동 사업의 경우 콘텐츠 제작



은 2012년 138개에서 2016년 3,175개로 증가한 반면, 이용자수의 경우 1개 콘텐츠에 대한 1일 평균 접속자가 18회에 그치는 등 주민의 마을미디어 이용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

또한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 관련 사업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시설의 규모 등의 차이를 보일 뿐이며 서울시 소재 미디어센터의 시설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수요적 필요성이 적고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과 중복됨에 따라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 이에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경우 기존의 마을미디어사업과의 차별성을 갖고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간 연계를 통해 상생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 삼선동에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15. 6. 30)  
→ '길음동문화복합 센터'로 확장 이전 추진 ('19년3월)
- 운 영 : 시청자미디어재단(방통위 산하기관)
- 위 치 : 성북구 삼선동5가 17 (전용면적 370㎡)
- 주요시설 : 디지털교육실, 장애인방송제작실, 편집실 등
- 주요기능 :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미디어장비 및 미디어 활동공간 대여 등
- 소요예산 : 21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 ※ '18년 이전에정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내 구축) 개요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1286-8 (길음 뉴타운 부지 내)
- 규 모 : 부지 4,143.5㎡(서울시 3,579.5㎡, 성북구 564㎡) 연면적 7,865㎡ (지하2~지상4층)  
※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간 : 연면적 2,000㎡
- 이전시기 : '19년 3월 (공사기간 '15~'19년 3월)
- 시청자미디어센터구축 사업비 (국비 6,205 / 시비 2,482 / 구비 621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한 동의안

|          |      |
|----------|------|
| 의안<br>번호 | 1728 |
|----------|------|

제출년월일 : 2017년 4월 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성북구 길음뉴타운 지역은 타권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문화인프라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시유지에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 나. 지역균형발전 및 문화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북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유지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토지개요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1286-8
- 면적 : 3,579.5 $m^2$   
(구유지 564 $m^2$  포함 토지면적 총 4143.5 $m^2$ )
- 소유자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사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공시지가 : 11,504,513천원(3,579.5 $m^2$  × 3,214천원)

## 나.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 성북구 길음동 1286-8
- 세부내용
  - 건축면적 : 1,120 $m^2$
  - 규 모 : 연면적 9,150 $m^2$ (지하2, 지상4)
  - 용 도 : 문화복합미디어센터(시청자미디어센터,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공연장 등)
- 사 업 비 : 25,960백만원(국비 7,900, 시비 6,242, 구비 11,818)
- 사업기간 : 2015. 1. ~ 2018. 12월

## 다. 그간의 추진사항

- 2014. 3.~7. : 길음뉴타운 공공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타당성 조사)
- 2015. 7.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계획 수립(성북구)
- 2015. 8. :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적정)
- 2015. 10. :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조건부)
  - 조 건 : 동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조건
- 2015. 11. :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계획 수립 (행정1부시장 방침 제418호)
- 2016. 3.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내 용 : 임시공영주차장으로 2016. 6. 30까지 성북구의 사유지 무상사용 승인

- 2016. 7. ~ 11. : 설계공모
- 2016. 11. : 설계용역 착수
- 2017. 2. : 토지 재산관리관 변경(서울도서관 → 문화시설과)
- 2017. 3.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내 용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및 운영 목적으로 '17.7.1.~'22. 6. 30.까지(5년간) 성북구의 사유지 무상사용 승인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량·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나. 예산조치 : 2017년 4,756백만원 기확보

(시비3,206, 국비450, 구비1,100)

※ 작성자 : 문화시설과 문화시설2팀 김강희 (☎2133-4229)